

「사회적 거리두기」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

「사회적 거리두기」 연장·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

구 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국공립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 중단 ▶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
사회복지이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
아파트·사업장 내 편의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운영 중단
주민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
숙박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 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파티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집합금지
감염취약 위험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요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▶ 외부인 출입통제(면회 금지) ▶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(기록) ▶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
편의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(야외테이블 포함)에서 음식 섭취 금지